

순천대학교 공과대학공동실험실습관운영규정

제정 1992. 8. 13.

개정 1994. 11. 28.

개정 1995. 3. 29.

개정 2017. 2. 23.

제1조(목적) 순천대학교공과대학공동실험실습관(이하 “실험실습관”이라 한다)에 관한 규정은 공과대학 각 학과의 주요 실험·실습 기기의 중복시설의 방지, 고가의 장비 공동구입·활용도의 제고·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) 실험실습관은 학생교육, 교수의 학술연구 및 산학협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공동실험실습 기기의 관리운영
2. 연구시설, 기계부품 및 자재의 도입
3. 각종 재료의 특성 측정 및 성분 분석
4. 공동 실험·실습 시설 및 장비의 활용 지원
5. 기타 실험실습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

제3조(조직) 실험실습관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.

1. 실험실습관에는 관장과 조교 및 기사를 둘 수 있다.
2. 관장은 이 대학교의 부교수이상의 교원중에서 공과대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고,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.
3. 관장은 공과대학장에게 매월 실험실습관의 운영상황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4. 실험실습관에는 행정실·전자계산실·재료실험실·기초과학기기 분석실을 두며, 각 실(행정실은 제외한다)에는 실장과 기사를 둘 수 있다.
5. 각 실장(행정실은 제외한다)은 공과대학 조교수이상의 교원중에서 관장의 추천으로 공과대학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제4조(분장업무) ① 행정실은 서무·회계·보안 및 연구시설·기기·부품 및 자료의 구입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

② 전자실은 학생들의 전자계산기를 이용한 전산 응용실습과 교수연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

③ 재료실험실은 각종 재료의 특성시험 및 조직분석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

④ 기초과학 기기분석실은 공동정밀기기를 유지, 관리하고 정밀물리 측정에 관한 사항과 각종 시료의 성분 분석 및 물성측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

제5조(운영위원회) ① 실험실습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과대학 행정실장과 공과대학 교원중에서 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공과대학장이 임명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.(개정 1995. 3. 29)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본 운영계획의 수립
2. 제규정 제정 및 개폐
3. 예산 및 결산
4. 실험실습기기의 구입·설치 및 이용제도에 관한 사항
5.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6조(경비) 실험실습관의 경비는 대학회계 또는 기타 경비로 충당한다.(개정 2017. 2. 23.)

제7조(운영세칙) 각 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운영세칙을 정하고 운영세칙은 운영회의 심의를 거쳐 공과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(1994. 11. 28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1995. 3. 29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2. 23.) (순천대학교 학칙)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부터⑬까지 생략

⑭ 순천대학교 공과대학공동실험실습관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(경비) 본문 중 “국비”를 “대학회계”로 한다.